

의 안 번 호	제965호
의 결 연 월 일	. . . (제 회)

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자	산업경제위원장
제안연월일	2025년 4월 22일

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65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4월 22일

제안자 : 산업경제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개정은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회계연도와 공무원 파견 근거 조항을 규정하여 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“지역산업”의 정의 인용 법률 수정(안 제2조제1호)
- 회계연도를 충북도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여 지방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(안 제8조)
- 공무원의 파견 목적과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 신설 (안 제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,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- 조례안예고 : 2025. 4. 15. ~ 4. 20.
- 협의 : 과학인재국 과학기술정책과
- 비용추계 : 붙임

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**도내**”를 “**충청북도내**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**국가균형발전 특별법**」 제2조제4호 및 제5호와 제11조1항”을 “「**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**」 제2조제6호 및 제8호”로, ““**광역협력권산업**””를 ““**초광역권산업**”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테크노파크는**”을 “**테크노파크가**”로 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**도**”를 “**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**”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회계연도) 테크노파크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공무원의 파견) 도지사는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경영지도 등 전문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도내</u> 산업 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<u>충북테크노파크</u> 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충청북도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지역산업”이란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4호 및 제5호와 제11조1항에 따라 선정된 ‘지역특화산업’ 및 ‘광역협력권산업’을 말한다. 2. ~ 4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 및 제8호----- ‘ <u>초광역권산업</u> ’-----. 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사업) ① <u>충북테크노파크</u> (이하 “ <u>테크노파크</u> 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·2. (생략) 4. ~ 10. (생략) ② <u>테크노파크</u> 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다.	제3조(사업) ①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~ 9. (현행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 ② <u>테크노파크</u> 가 ----- ----- ----- -----.

제4조(기본재산의 조성)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제4조(기본재산의 조성) ----- ----- ----- --.
1. 도 및 시·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	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--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7조(보고 및 검사) ①·②·③ (생략)	제7조(보고 및 검사) ①·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8조(회계연도) 테크노파크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.
<신설>	제9조(공무원의 파견) 도지사는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경영지도 등 전문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6. “지역특화산업”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산업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.
8. “초광역권산업”이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·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.

□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

제22조(기술지도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입주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다.